#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40

발의연월일: 2021. 6. 7.

발 의 자 : 변재일 · 윤영찬 · 이용빈

이장섭 · 임호선 · 한준호

설 훈·홍익표·강선우

이정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000억원으로 2019년 (6,398억원)과 비교하면 9.4%, 2017년(2,470억원)과 비교하면 3년 사이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했음.

최근에는 일명 심박스(SIMBOX)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심박스 고유식별번호(IMEI) 사용차단이불가능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사용을 차단하는 통신단말장치의 범위를 현행 '분실·도난된 장치'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범죄조직은 수사 회피 및 사용 차단 방해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IMEI를 위·변조 할 수 있어, 훼손·위조·변조된 IMEI 또한 사용차단 범위에 포함하여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함(안 제60조의2. 제60조의3).

법률 제 호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 중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분실 또는 도난 등 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 1. 이용자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 한 통신단말장치
-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사 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통보한 통신단말장치

제60조의3 중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 된"을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96조제10호의2 중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을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혅 행 아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①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 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는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 당하는----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전기 통신사업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신 설> 1. 이용자가 분실 또는 도난 등 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 게 신고한 통신단말장치 <신 설>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 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인

- ② (생략)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 통 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 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생략)

-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u>분실 또는</u>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10. (생략)
  - 10의2. 제60조의3을 위반하여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하여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에 통보한 통신단말장치
② (현행과 같음)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u>당하는</u>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
의 금지) <u>제60</u> 조의2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제96조(벌칙)
<u></u>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단말장 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 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 11.·12. (생 략)

하나에 해당하는
11. • 12. (현행과 같음)